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.

- 2004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,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, 9월 14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,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 - 종전의 「국립보건원」이 「질병관리본부」로 직제가 개편되고, 「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」도 「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」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(보건복지부령 제264호, 2003. 12. 27.),
 -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시험·검사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문구를 변경하고,
 - 기타 일부 조항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
- 주요 내용으로는,
 - “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”을 → “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”로 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고(안 제3조제1항),

- “충청북도여비조례”를 → “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”로 하였으며(안 제3조제4항),
- “공중위생법”을 → “공중위생관리법”으로 하고(안 제5조),
- 별표 1의 시험종별란중 “하천수, 호소수, 오탁수·분뇨, 폐수검사”에 “침출수 검사”를 추가하였습니다.

□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제출된 “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”은
 - 종전의 「국립보건원」이 「질병관리본부」로 직제가 개편되고, 「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」이 「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시험·검사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,
 - 기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그러나, 「공중위생법」이 「공중위생관리법」으로 개정된 것은 **1999년 2월 8일**이며, 「충청북도여비조례」가 「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」로 개정된 것도 **1999년 7월 30일**인 바,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시 신속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

□ 이상으로 "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"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